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16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의 안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전체회의 상정일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2294 | 강대식의원 | 2024. 7.26. | 2024.11.15. |
| | 2204422 | 강대식의원 | 2024. 9.30. | |
| | 2204481 | 강대식의원 | 2024.10. 2. | |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에서 법률안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 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 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 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병무청장은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제 7항·제8항 및 제10항 신설).
- 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

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안제85조, 안 제95조제5항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를 "제8항까지의"로 하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 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①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6조제5항의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

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통지서 수령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 달) ① ~ ④ (생 략)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 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 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 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 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 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 송달하여야 한다. 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신 설>

본다.

<신 설>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 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 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 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 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

아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 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 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u>⑦</u> (생 략)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 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 로 송달할 수 있다.

<u>⑨</u> (생 략)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생 제략)

<신 설>

|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 | | | | | | |
|---------------------|--|--|--|--|--|--|
| 여야 한다. | | | | | | |
|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 | | | | |
|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 | | | | | | |
| 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 | | | | | | |
| 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 | | | |
| <u> ⑨ 제8항까지의 -</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현행 제7항과 같음) | | | | | | |
| ① 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현행 제9항과 같음) | | | | | | |
| [83조(전시특례) ① ~ ⑥ (현 | | | | | | |
| 행과 같음) | | | | | | |
|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 | | | | | |
| | | | | | | |

<신 설>

⑦ (생 략) <신 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 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

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 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 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 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 방법 · 절차, 제7항에 따른 교 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 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 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 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 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 과·징수하다.

<u>⑥</u> (생 략)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6조제5항의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u>6</u> | <u>제</u> 5학 | <u>5</u> } | |
|----------|-----------------|------------|--|
| | | | |
|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